

	학생상담센터규정	문서번호	MSU-13-2
		제정일자	2014. 4. 3.
		최종개정일자	2018. 2. 2.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학생상담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목포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'상담센터'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상담센터는 우리대학 대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상담·연구 활동을 도모하여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2. 성격, 인성,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
3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과 처리
4. 성폭력에 관한 피해 신고 및 접수
5. 자살, 약물, 중독 등 위기상담
6.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
7. 상담관련 프로그램 및 교양 강좌
8. 사이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
9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조직 및 직무

제4조(센터장) ① 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상담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 상담부, 진로 상담부, 성 상담부를 둔다.

② 상담센터에는 전담직원, 행정조교, 외부전문가, 객원상담사, 인턴상담사, 자원 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③ 객원상담사 및 인턴상담사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전담직원은 상담 및 임상을 전공한 자로 학생상담과 심리검사, 교육에 충분한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, 1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며,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담센터 운영 계획, 평가 및 개선
2.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

제7조(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) ① 학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대처방법 및 성폭력 피해자, 가해자 상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'고충심의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며, 대학 전임교원 및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상담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에 관련된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
2. 사안의 조사·중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요청
3. 사건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
4.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

⑤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결정 및 처리)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·성폭력 피해에 관한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.

- ① 가해자에 대하여 학칙 및 관계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
- ②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, 봉사, 배상 등의 지도
- ③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
- ④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·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
- 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 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⑥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

야 한다.

제9조(비밀의 준수) 성희롱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장 보 칙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일 부터 시행한다.